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한범 의원 외 6명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6년 09월 27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09월 27일

3. 제안이유

의회 운영에 있어 그 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를 “연장자” 에서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로 변경(안 제8조제3항)

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에서 “5일” 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을
삭제(안 제22조의2제3항)

다. 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68조의2)

5. 검토내용

가. 규칙개정의 필요성

- 의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규칙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규칙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규칙안 예고를 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규칙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본 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의 선거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 및 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